

「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6월 27일

나. 발 의 자: 소진혁·김근한·김낙관·김원섭·김춘남·박교상·신용하·
양진오·이명희·이정희·장미경·정지원 의원(12명)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27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7월 6일

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소 진 혁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「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, 빈곤, 건강, 이혼 등의 사회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독사 또는 고독사 의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.
- 이에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,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, 실태조사(안 제3조~제5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
- 부서검토: 복지정책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·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저출산,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, 휴폐업, 질병, 소득

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체계 확충과 지원강화가 필요한 실정임.

- 지난 4월 홀로 거주하는 구미시 시민의 응급 구조에 큰 역할을 한 복지부 공모사업인 ‘AI스피커 통합돌봄사업’ 이 올해 말 사업의 종료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지속,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, 제7조와 제9조의 내용을 통해 구미시의 다양한 고독사 예방 돌봄사업을 모아 재정비하고, 인근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